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5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28.

다. 회 부 일 : 2026.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근거</u> <u>신설</u>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u>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
·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이에 개정안은 2026.2.27. 제정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2028.4.22.~10.22.)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박람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요]

- ◇ 기간 : 2028. 4. 22. ~ 10. 22. (6개월)
 - ◇ 장소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남산로 일원
 - ◇ 규모 : 31개국 + α / 목표 관람객 1,300만명
 - ◇ 주최 / 주관 : 산림청 · 울산광역시 / (재)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 ◇ 사업비 : 484억원(국비 97억원, 시비 242억원, 수입금 145억원)
 - ◇ 내용 : 국가정원 정비, 삼산·여천매립장 정원 조성, 국제심포지엄 등
- ※ 박람회 이후 부지·기반시설을 활용,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 자료: 재정경제부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³⁾에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규정한 바 있음⁴⁾.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⁵⁾는 국유재산특례의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2024.12.31. 폐지

4)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5)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현재 사업면적 121만㎡ 중 국유지는 약 88만㎡ (90필지) 수준으로,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면제함으로써 박람회 준비 등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박람회 행사장 중 국·공유지 편입규모]

구분	태화강 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지		합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국유지	60	770,410	30	110,158	90	880,568
공유지	17	65,042	26	189,659	43	254,701
합계	77	835,452	56	299,817	133	1,135,269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조직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⁶⁾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⁷⁾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2029.12.31.) 및 박람회 개최 일정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하다고 보임.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특례 신설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6) 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신설>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문의처

02)6788-5160